

제3회 인권경영위원회 회의결과

- 일 시 : 2021. 12. 27.(월), 10:30~
- 장 소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중회의실
- 참석자 : 7명(참석인원) / 7명(재적인원) (간사 제외)
 - 위원장 : 이종범 기획조정본부장
 - 위 원 : (내부) 강경남 경영기획부장, 김진우 경영지원부장, 박진희 사업지원부장
(외부) 김성범 변호사(법무법인(유)세종), 임종호 노무사(노무법인 유앤), 이용기 대표((주)플러스인씨엔씨)
 - 간 사 : 정진용 경영기획실장

□ 회의결과

심 의 안 건	결 과	비고
<의결안건 제1호> 2021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심의	원안 의결	
<의결안건 제2호> 2021년 대표현안사업 인권영향평가 심의	원안 의결	

제3회 인권경영위원회 회의결과 세부내용

[심의안건 1호] 2021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심의

□ 회의결과 : 원안 의결

- 연구원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인 인권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평가하여 연구원의 지속가능 발전 도모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인권경영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지표를 기반으로 총 10개 분야(인권경영이슈)별 158개 세부지표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인권영향평가 세부내용

-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고용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강제노동·아동노동의 금지, 산업안전보장,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소비자인권 보호 분야에서 진단결과, 단 1건*의 “보완필요”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예” 도출되어 우리원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인권 침해의 소지 없이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6번(인권정책선언은 정기적으로 재검토되고 개선된다)의 경우, 차후 외부전문가를 통한 체계적이고 면밀한 검토 필요

- 고용상의 비차별 분야 47번(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현지 문화와 제도를 존중한다.) 문항의 경우 인권경영 이행규정 “제6조(고용상의 비차별) 연구원은 임직원이 가진 종교적,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한다.”를 통해 우리원은 현지 문화와 제도를 존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산업안전 보장 분야 97번(장애인들이 기관 내에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문항의 경우 최근 청정기술연구소는 장애인 직원의 편의를 위해 건물 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여 장애인 직원의 이동 편의성 제고(향후 지속적으로 장애인 업무 환경 개선 노력 필요)

-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분야의 경우 인권경영 이행규정 내 자회사, 협력회사의 인권경영활동을 요구하는 등 기관 외부의 공급망을 포함시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외부 기관의 경영방침을 통제할 수 없고 국가 계약법 상 인권경영 관련 부정당업자 정의가 없어 시정조치가 어려운 상황
- 또한 기관의 보안담당 직원은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보호와 관련한 별도의 전문적인 교육 이수 필수(향후 전 직원 교육 확대 필요)
- 환경권 보장 분야의 경우 우리원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목적으로 환경훼손 및 환경재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환경경영체제의 도입 필요 (환경경영체제의 수립 및 유지)

☞ 2021년도는 2020년도와 대비하여 ‘예’ 지표가 129에서 133으로 상향되었으며, ‘보완필요’와 ‘아니요’ 지표는 각각 7개에서 5개, 15개에서 6개로 하향되어 전년 대비 인권리스크가 감소했다는 결론 도출 가능

〈 2021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종합통계표 〉

구분	분야	답변결과					계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29	1	-	-	-	30
2	고용상의 비차별	17	-	-	-	-	17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14	-	-	-	2	16
4	강제노동의 금지	10	-	-	-	1	11
5	아동노동의 금지	5	-	-	-	9	14
6	산업안전 보장	17	-	-	-	-	17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4	3	1	-	2	10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10	-	-	-	-	10
9	환경권 보장	12	1	5	-	-	18
10	소비자 인권 보호	15	-	-	-	-	15
합계		133	5	6	-	14	158

○ 향후 추진계획

-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경영위원회의 권고의견을 통해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차년도 인권경영 목표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 제도개선* 필요

* 답변결과 ‘보완필요’, ‘아니요’로 응답된 지표 중심

- 본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향후 연구원 내 인권경영 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결과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기관운영, 법규, 정책과 사업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인 적용을 통해 지속적 환류체계 구축

단계	도입기(2019)	성숙기(2020~2021)	안정기(2022~)
목표	글로벌 수준의 인권경영제도 구축	글로벌 인권경영 도입 및 실행	인권경영제도 보완 및 공유 확산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경영 관련 규범 제정 • 기본제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영향평가 실시 •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규범·제도 개선 • 인권 교육 • 구제절차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규범·제도 강화 • 대표현안사업 인권영향 평가 확대 • 연구원 특성에 맞는 기관운영 지표 개발 및 보완 • 인권경영 종합평가

[심의안건 2호] 2021년 대표현안사업 인권영향평가 심의

□ 회의결과 : 원안 의결

- 연구원의 대표현안사업을 선정하고, 이 대표현안사업으로 인해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인 인권리스크를 사전에 평가하여 연구원의 지속가능 발전 도모
- ‘시험·인증 부문’ 및 ‘연구소 환경 개선사업’을 대표현안사업으로 선정하고 담당부서 인터뷰 등을 기반으로 총 4개 분야 19개 세부지표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대표현안사업 인권영향평가 세부내용

- 시험인증분석은 우리원의 설립목적인 “생산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지원 및 성과 확산 등을 통해 국가산업발전에 기여”에 부합하는 중요사업
- 시험·검사 신청 분야의 경우 우리원은 기관 홈페이지에 장비별 수수료와 담당자 정보를 게시하고, 계약서를 통해 수수료 산출내역(세부내역)을 공개하여 의뢰고객에게 투명성 있는 시험·검사 서비스 제공
- 시험·검사 진행 분야의 경우 우리원은 시험평가업무운영규정에서 “제6조(시험평가 처리순서) 시험평가의 처리는 접수순서에 따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및 “제14조(시험평가 수수료) 시험평가 수수료의 경우 국제공인 및 국가공인시험의 경우 관련된 법적인 근거에 의하고...” 등을 명문화하여 공정한 기준에 따라 시험·검사 서비스 시행
- 시험·검사 사후관리 분야의 경우 우리원은 QR코드를 적용하여 시험성적서의 위·변조를 방지함으로써 객관적인 시험검사 결과 제공
- 청정기술연구소에서 연구1동 리모델링 및 연구2동 증축 등 연구소 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따라 인권침해 소지 여부 검토 필요
- 연구직·행정직 및 보직의 유무를 불문하고 다양한 구성원들로 연구소 환경개선사업 TF를 구성되어 구성원들의 고른 의견 반영을 위한 노력
- 실험실별 배기장치 등 환기시스템을 적용하여 임직원의 건강을 고려하고, 미화원 및 여성 직원을 위한 휴게공간 확충 등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에 있어 차별의 요소 배제

☞ 모든 항목에서 '예' 응답 확보 (인권리스크 ↓)

〈 2021년 대표현안사업 인권영향평가 종합통계표〉

구분	분야	답변결과					계
		예	보완 필요	아니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시험·인증 부문							
1	시험·검사 신청	4	-	-	-	-	4
2	시험·검사 진행	5	-	-	-	-	5
3	시험·검사 사후관리	5	-	-	-	-	5
연구소 환경 개선사업							
1	계획 수립	5	-	-	-	-	5
합계		19	-	-	-	-	19

○ 향후 추진계획

- 지속적으로 시험·인증과 관련하여 인권침해의 소지여부를 관리감독하고, 의뢰고객 대상 만족도 조사를 통해 미흡 및 불편사항 개선 노력 추진계획